

**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**(제16조제1항 관련)

요소	지정기준
1. 일반기준	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(공원을 포함한다)을 10만㎡ 이상 소유 또는 임대할 것
2. 기본시설	<p>가. 강의실은 교육인원 1명당 1㎡ 이상으로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</p> <p>나. 실내실습장은 교육인원 1명당 1.2㎡ 이상, 총전용면적 200㎡ 이상일 것. 다만, 2개소 이상의 실내실습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하여 총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.</p> <p>다. 도서실은 열람좌석 10석 이상으로 산림 관련 도서를 200권 이상 갖출 것</p> <p>라. 관리실 및 사무실, 안내시설은 사무 및 시설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할 것. 이 경우 관리실 등은 겸용할 수 있다.</p> <p>마. 화장실, 급수·소방 시설, 채광·환기 시설, 냉난방시설, 조명시설, 방음장치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·교구 등을 갖출 것</p>
3. 지원시설	필요한 경우 세미나실, 자료실, 휴게실, 체육시설, 기숙사, 양호실,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
4. 전문인력	<p>가. 산림교육센터에는 상근 관리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</p> <p>나.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상근하고,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</p>
5. 프로그램	<p>가. 학교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확보할 것</p> <p>나. 산림교육을 위한 연중 교육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</p>